# 건축마당 법 령

law & ordinances

# 기반시설부담금 적용요율 등 구체적 산 정기준 마련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 회 개최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 12일 시행예정인 '기반 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 4월 20일 오후 2시 한국과학 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 동안 연구를 수행해 왔던 대 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주 최하는 자리로서 그 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담을 주요 내용인 기반시설부담금 산 정의 주요내용인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 설유발계수 등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전문 가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시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울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에 대하여 4 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지난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전 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 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되. 이미 기반시설 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 는 부과제외를 인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 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고. 징수되는 기 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 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며, 부담률도 기반시설부 담금(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의 100분 의 20으로 하되. 지자체의 장이 100분의 25의 범 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고자료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중 기반시설부 담금 산정 방식과 관련된 주요내용인 지역별 용지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시·군·구 별 개별공시지가 평균값 산정방법과 이미 기반시 설을 설치한 경우의 공제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방식〉

-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 률-공제액
- ① 58.000원/㎡( '06년 잠정)
- ② 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시· 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 ※ 참고자료 2: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식(신축. 증축의 경우)
- ①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58.000원/m²로 잠정 결정되었다
  - '00년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조성 공사가 발주된 전국 57개 택지개발지구를 대 상으로 하여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산출 한 결과 약 58.000원/m² 이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 구는 각종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조 성되므로 기반시설의 표준사례로 적합하며. 대상선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 지구 및 지역별 분포를 감안하였다.
- ※ 참고자료 3: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산출내 여
- ②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 반시설 유발계수,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통해 산정된다.
- 2-1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 0.1, 공업 0.2,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를 적용하였다.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표준용지환산(소요)계 수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으며.
  - -표준용지환산(소요)계수란 개발에 따른 필 요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전국 5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수행)의 표준기반시설 면적률(사업지구면적 대비 기반시설면적) 45%를, 동 지구의 용 적률을 고려한 건축연면적 대비 기반시설 면적률로 환산하여 계산한 0.4를 말하며, 이는 건축연면적당 40%의 기반시설면적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즉, 녹지 및 비도시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 비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가의 기준이 되는 기반시설면적이 건축연면적당 40%라는 것이다.

- 지역별 용지환산(소요)계수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설치된기존 도심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기 반시설면적을 고려하여 조정된 용지환산(소요)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각 지역별로설치된기반시설량에 해당하는 만큼 표준용지환산계수에서 차감하여 조정된계수를 말한다.
- -예를 들면, 주거지역 용지환산계수가 0.3 이라는 의미는 57개 지역 전체평균 환산 계수인 0.4를 기준으로 0.1은 이미 설치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건축연면 적당 0.3의 비율로 기반시설설치가 요구 된다는 의미이다.
- 이런 방식으로 각 지역별 기존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량을 차감하여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지자체 평균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및 비도시
환산계수	0.3	0.1	0.2	0.4

- ※ 참고자료 4: 표준용지환산계수 산출개요
- ②-2.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 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 설 1.4 등을 적용하였다.
  -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 반시설 유발계수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기 반시설 유발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 정해 주기 위한 계수로써
  -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유발량을 연면적 기준으로만 산정한다면 건축물 용도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량에 대해선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계수이다.
  - 건축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27개 건축물의 유사용도군 을 사용하였고, 공업용도의 경우는 다시 23 개의 세분화된 용도로 구분하였다.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이미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중인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 원단위를 비용원단위로 산출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발주한 57개 택지개 발지구의 7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적용하 여 주거용도를 기준으로 비교 산정하였다.

- ※ 참고자료 5: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②-3. 지자체별 평균공시지가는 정상적인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을 적용하였다.
  - 지자체별 평균공시지가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필지에 대한 보상비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바.
  - 시·군·구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산정을 위하여 2005년 개 별지 공시지가 특성조사표를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 를 평균공시지가 포함대상에서 제외하였 으며.
  -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면적가 중평균금액을 사용하였다.
- ※ 참고자료 6 :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구역 등
- ※ 참고자료 7 : 경기도 00시 개별공시지가 평 균 산정시례
- ③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제액은 납부의무자 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비 용을 한사한 금액으로 하였다.
  - 설치비용은 기반시설 면적(또는 연장)에 기반시설 종류별 표준조성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하고,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무상 귀속시킨 용지의 감정평가 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의 공제액은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당해 토지 가액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당 시설별 조성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된다.
  - \*\* 참고자료 8-1 :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사례 (신축, 증축 예시) / \*\* 참고자료 8-2 : 건축물 종류별 부과금액 / \*\* 참고자료 8-3
     : 기반시설연동제가 시행중인 경기도 00 시와의 비교사례
-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및 공제 와 관련하여.
  - 100% 제외되는 건축물로서 농업인의 공동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공공건

- 설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내 피해복구 건축 물 등을 추가하고
-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대상 건축물을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하였으며,
- 국가 등이 개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 지역, 혁신거점형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경 제자유구역 내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은 20 년간 부과면제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한편,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개별법상 납부한 부담금중 기반시설부담금 에서 공제하는 부담금을 구체화하여.
- 도로법·수도법 및 히수도법에 의한 원 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학교용지의확보 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등은 공제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 ■ 기타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물의 연 면적이 변경되거나 기타 부담금의 금액변 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 였으며
- 아울러 부담금의 예정통지와 심사 청구, 부 담금의 결정, 부담금의 납입 및 물납신청, 납부기일의 연기와 분할 납부, 부담금의 환 급 등 절차를 정하였고
- 부담금의 결정·부과, 납부의 고지, 물납의 인정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규칙(안)에서는 공제금액의 산정 및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된 서식 등 필요한 사항 등 을 정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동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4.21~5.12)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시행일인 7월 12일까지 제도 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www.kira.or.kr) '법령정보'참조
  - 문의 : 도시정책팀 윤영중 사무관 02-2110-8851, yoon8000@moct.go.kr

O 6 O 6 대한건축사협회 **091**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 제19466호)

### ■ 제안이유

「건축법」의 개정(법률 제7696호, 2005. 11. 8. 공포, 2006. 5. 9.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 동 분류체계에 맞도록 용도변경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새로 도입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절차 및 대지 안의 공지(空地)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절차(제10조 신설)
  - (1) 법률에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구체적 인 운영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허가권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관계 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안에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3) 건축허가의 신청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지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건축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용도변경을 위한 용도시설군의 재분류(제14조 및 별표 1)
- (1)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용도가 동일한 군(群)으로 분류되어 건축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2) 법률에서 용도의 유사성 및 하중정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22개에서 28개로 분류한 것을 기초로 하여, 용도시설군도 영업 및 판매시설군 등 6개군에서 자동차관련 시설군 등 9개군으로 분류하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재분류함.
- (3) 건축물 용도구분에 부합하는 분류체계가 마련되어 건축물의 기능에 맞는 구조안전의 확보 등 합리적인 건축기준의 적용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 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및 별표 2 신설)
- (1) 법률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다세대주택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아파트는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정함.
- (3) 최소한의 공지확보로 사생활의 보호와 주민 사이의 분쟁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대지 안의 통풍이 원활하게 되어 개방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 ■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제1조(목적)「건축법」		것	는 변경하는 것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것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2조(정의) ①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다음과 같다.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증설 · 해체하거나 수선 · 변경하는 것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	$6$ , 주계단 $\cdot$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cdot$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	14		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해체하거나 수선 · 변경하는 것
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용도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경계벽을 증설 · 해체하거나 수선 · 변경하는 것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
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조(대지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제3조(대지의 범위)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하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건축위원회) ①·② (생 략)	제5조(건축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③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②(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다.	있다.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	다음 각 호		1.~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	의 어느 하나		〈신 설〉	4. 건축방재분야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건축에너지분야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신 설〉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분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신 설〉	7. 조경분야
2,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		4. (생 략)	8. (현행 제4호와 같음)
것	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④법 제4조에 따라
3.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J		

# 신 · 구조문대비표

<u> </u>	·
현 행	개 정 안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	
를 둔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
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 <del>물원</del> 을 제
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	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
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
건축물	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8 즉/ 〈신 설〉	다. (단영과 EE)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u> </u>
자격·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	
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자격·임명 및 위촉 기준	1.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기준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
	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이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할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6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	고기 근되기이는 너무 그 오기 [문에 띄는데,
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1, 15, (전용파 트급/ 4.
4. 신송군와의 모흔들 위에서 독달시 · 성역시 · 도 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의	4
	H 게이지미네하다네네는 미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1호 및 법 제36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의 규정에 의한 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
《신설》	4의2.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
	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
	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
- 10 to 10 old - coldett =	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이상 경과되어 리모델	5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
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등을 위	
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
말한다)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기준
②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	②
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2의 경우
가.·나.(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5호의 경우	2,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개축은 나목의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건축물과	〈삭 제〉
의 접합부분 또는 그 접합부분의 인접부분에	
한하여 할 것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3(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등) ①법 제5조
	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

현 행	개 정 안
전 행 행 제8조(건축하가) ① (생 략) ②법 제8조제(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촉 100미터 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 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촉 50미터 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 · 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하가권자가 지정 · 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하거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정 · 공고한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의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③ (생 략) ④법 제8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개 정 안  구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2. 구조제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②법 제5조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건축하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 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산림법」 제62조, 동법 제10조 및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 · 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	
17. 「문화재보호법」제20조 18. 「전통사찰보존법」제6조의2 ⑤하가권자는 법 제8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 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 ①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
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증권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의	관계 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에	로 관계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			는 이율"이라 함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안
에 갈음할 수 있다.			전관리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 안전관리예치
〈신 설〉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8조의2제1		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제11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	제11조(건축신고) 〈삭 제〉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	
	2, 「해군기지법」 제6조	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동법 제38조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작물재배사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9. 「학교보건법」제6조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5500 710)
	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신설〉	5.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12, 「주차장법」 제19조, 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19조의4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14.「자연환경보전법」제20조	@ (4H =H)	축사·작물재배사
	15, 「수도법」 제5조 16. 「다니고통제비 초지버 제16조 미 도버 제19	③(생략)	③ (현행과 같음)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   조	제12조(허가·신고시항의 변경 등) ①법 제10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법 제10조제
	조 [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왕의 규정에 의하여 하기를 받았거나 신고인 사영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
	17. 군외시도오립] 시20조 18.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파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기를 받거나 시장·	자의 허가를 받거나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크 에기를 근기터
	지법」 제11조제1항, 동법 제12조 및 동법 제14	1. (생 략)	
	ス ス	2. 법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	2,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20. 「농지법」 제34조 및 동법 제36조	정에 의하여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	2, 8 7102 1118/1122 212 710231 44
	21.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8조	3. (생 략)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제14조(용도변경) 〈삭 제〉
	③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	여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	
	의회의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협의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삭 제〉
	회의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야 한다.	말한다.	
	⑤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	
	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	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	
	출하여야 한다.	는 경우	
	⑥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2,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	
〈신 설〉	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8	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	
	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	는 경우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3.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	
	말한다.	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	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	
	증권	는 경우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 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	

현 행	개 정 안
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4조제3항제5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 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6,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 하는 경위(중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8.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기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 (5)\$H=1,71(0)
③(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4조제3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 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④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이라 함은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천당 이다 임근 글로 1의 등일한 오에 녹이는 신 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7. 영합 및 한테시킬로 가. 위략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죽을 정보인의 중보단성을 할만의.
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del>공공용</del> 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 <del>종근</del> 린생활시설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⑤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	⑤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우를 말한다.	1. 자동차관련 시설군
1,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자동차관련시설
변경인 경우	2, 산업등 시설군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	가. 운수시설
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나. 창고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다. 공장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종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는 경우	바.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 <del>송통</del> 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파매시석

가. 판매시설

현 행	개 정 안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del>공동</del> 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11 3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⑥(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⑦
라 함은 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	
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	축사
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 ·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제()3소(기열신국물/ () 각 호
말한다.	
크린니.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5판매시설 · 운수시설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J한메시글 <sup>*</sup> 단구시글
음. (생 략)	
2~5 (생 략)	0. (204 EB) ②~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	© (284 EB)
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	<u> </u>
조·법 제29조 내지 제33조·법 제35조 내지 제	
41조·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제49조·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제55조·법	
제57조 · 법 제59조 · 법 제59조의2 · 법 제59조의	법 제46조 내지
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0조 · 법 제51조 · 법 제53조 · 법 제55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MOOT & MOIT & MOOT & MOOT
기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
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2 C8011C NC CN/1C CT 12 C4/N
(신 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
	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
	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을 제출한 경우에는 기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
	글 제출한 8구에는 기글단국물국고인고시의 제출 을 생략하다.
〈신 설〉	을 성막한다.
(건 글)	물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
	식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허가권자는 법 제18조	전포실증을 전포한에게 교구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삭 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	게마스(단치르크 이용이다/ \그 게/
시간성의 규정에 의하여 중사심리사를 사장하지 아니는 기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건축	
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일~④(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법 제18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ㄴ ㄹ/	응답 제16호제6명 우란에서 대용당당이 장아는 주요공사의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I 파이시크 NO시 된 참는 되는 것 보기 있는 이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물의 건축허가 ·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으	되는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	
	로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	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급받은 건설업자	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허가권자는
	2,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통신공시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del></del>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이라 함은 별표 1	한다. 1.·2.(생 략)	 1,·2, (현행과 같음)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②(생략)	(한왕의 EB) (2) (현행과 같음)
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신고대상 건축물(제4호 및 제5호의 건축물을 제외			같음)
한다)과 건축물의 구조안전·미관 및 기능상 지장		〈신 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 단
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			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		/41 /47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허		(신설)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법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
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			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
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
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 중
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			1.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및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다 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2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2. 신신자료의 임위 및 내용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기축물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			②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
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자료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			서 신청하여야 한다.
링을 하는 건축물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19조(공사감리)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제19조(공사감리) ①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		장은 다음 각 호의 시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15조제	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기에야 건데.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설건축물을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2,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기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에의 적합 여부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			여부
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 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			④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 인을 얻으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
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			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
법 시행령」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			사결과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	〈삭 제〉		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			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기재한 문
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서로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법 제2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용도 ·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보호기준"이라 함은 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	〈삭 제〉		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
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개인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A- 7I/\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
3. 제8조제2항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삭 제〉 		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   〈삭 제〉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
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	〈삭 제〉		수 있다.
링을 하는 건축물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
②~9 (생략)	②~⑨ (현행과 같음)		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시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분실·도난 등
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	권자는 법 제23조제 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이지 아시네이 단독교이 단독프네시 영어는 단독	0		, 사르 · X

Norean Architects june 2006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⑥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67조에 적합
	구청장은 법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지 여부
	이용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관		3. 구조안전 : 법 제38조에 적합한지 여부
	리하여야 한다.		4. 화재안전 : 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법 제43
<u>!</u> 설〉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및 법 제44조에 적합한지 여부
	대상 등) ①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5. 건축설비 : 법 제55조 및 법 제57조에 적합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		지 여부
	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9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		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	제24조(건축지도원) ①건축지도원
	1. 건설교통부장관 : 연간 50만건 이상 전국 단위	축지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2, 시·도지사: 연간 10만건 이상 시·도 단위의	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자중에서 지정한다.	갖춘 자 중에서
	3. 시장·군수·구청장 : 연간 5만건 이상 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②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각호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구청장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2,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및 회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	유지 · 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 · 지도 및 단속	안전, 건축설비 등
	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여야 한다.
	자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	제25조(건축물대장)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구청장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3. 기타 기재내용의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	로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이	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사대상자에게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자의 인적사	정하는 경우	
	항, 조사일시 등을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생 략)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대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결과를 조사대상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직통계
2조의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법 제25조의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법 제25조의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민원실	6에 따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2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	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락시설 중 주점영업
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는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인 것	
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적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가 법 제26조제1항의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지침등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	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
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 · 관리	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이동관련시설·노인	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
	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	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따른 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스텔
	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	3.~5. (생 략)	3.~5. (현행과 같음)
	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ㆍ관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 ② (생 략)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	③ 판매시설
	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	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하여야 한다.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③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	설치하여야 한다.	
	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u> </u>
	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	판매시설, 운수시설
	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	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	
	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설에 한한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	
	1. 대지 : 법 제30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법 제	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	수련시설 중
	37조에 적합한지 여부	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	
	2. 높이 및 형태 :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0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0606 대한건축사협회 **097**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2. 높이 및 형태 :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0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
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	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한다)		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을 설치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부분	
제38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	제38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	7
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
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1. (생 략)	1의2, 종교시설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법 제39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신 설〉	2. · 3. (현행과 같음)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아
2. · 3. (생략)	제39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①법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	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제39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다) 또는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	
제39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		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	다음 각
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	
따라 당해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건축물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	호의 어느 하나
글 설시이어야 인다. 1. (생 략)		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영덕) (신설)	1. (연양파 (జ급) 1의2, 종교시설	1. ' 2. (영 덕)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	1, · ∠, (선생과 숱금)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
(전 절/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2. 판매시설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	면 시설·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스 현매 및 영립자들당 포메시영·포메시영 및 상점	2. 현매시달	다)과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하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도메시승은 EE 전국을 전에 함께 글시글 구 없 다.
3. <sup>-0.</sup> (8 <sup>-4</sup> )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제48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	니. 제48조(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법 제39조
8. (생 략)	7. 표적인 1 시설 8 국표 8. (현행과 같음)	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0. (8 즉) ② (생 략)	(한행과 같음)	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제40조(옥상광장등의 설치) ① (생 략)	제40조(옥상광장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②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Cole / Leal Heoly in Evilotete CH.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동 · 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건설교
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	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
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			다.
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의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	교육연구
③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③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	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또는 설	
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이동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	이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	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		시설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하여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법 제39조제2	제53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법 제39조제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2,	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은 유효너비 3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_	계벽 및 간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터 이상	- (7)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간 또는 공동
3. (생략)	3, (현행과 같음)	벽(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벽(제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2조제15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 용도로
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2. 공동주택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2교육연구시설 중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	자동방화셔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	
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		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		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9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 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	<u> </u>
부군에는 제1명의 규정을 작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지 외력 및 제미립인들 영화구조로 안 짓과 무대 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에 시성할 소대하지 아니아는 임취에서 제1명의 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의 마닉는 그리아시 아니아나.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그 비오르 나뉘에게 그어르 ㅜ ㅆ네.		수 도착 본 마셨지요(도시이 본 요 . 구들면들 세포	그 교기 저 마시지리(다시이 첫 전 구글만큼 세퍼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	교(초등학교에 한한다)·생활권수련시설·자연	(초등학교에 한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락시설 중 주점영업	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 여인숙. 위락시	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	F-12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설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	L -1L-1, 11 F-12 O
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건축물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건국을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		의한 다중이용합( <del>ㅠ공 )</del> 188합을 제되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	•		
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	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신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
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 체			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
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방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
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		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생 략)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현행과 같음)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건축주는 제1항 각호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5.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	5.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한다.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	③제1항에 따른
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 <u>스호스</u>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로 축조하여야 한다.	
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④∼⑥ (생 략)	④∼⑥ (현행과 같음)
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①(생 략)	① (현행과 같음)
6.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6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2
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시설중 발전소(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	(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다)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2,
건축물을 제외한다.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②(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에서 "대	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	
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		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에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가. (생 략)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신 설)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			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
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			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
외한다.	-		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
되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1		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
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		11 CL /14 3A	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나. 다. (생 략)	다. · 라.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신 설)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
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
건축물	O CICARI A CIAARII SINDARII DOCANI		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는 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
활시설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		0.044.70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설중 학원·이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	③·④(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	<u> </u>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	중	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공원(「도시공원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다)·도	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로ㆍ철도ㆍ하천ㆍ광장ㆍ공공공지ㆍ녹지ㆍ유수	곱미터 미만인 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10만제곱미
건축물		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	터 미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3	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	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
관련시설 또는 <del>공공용</del> 시설중 발전소·방송국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	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	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송국 · 촬영소 또는 발전시설	지경계선으로 한다.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
4.·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을 포함
6.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한다)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	,	제86조의2(재해관리구역) ①법 제54조제1항 전단에	

<u> </u>	(0)	ži 6	게 ㅎ 근
만 등 성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상습 침수 · 홍수 · 산사태 · 해일 · 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소조제'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종재해 관리구역 · 제2종재해관리구역 및 제3종재해관리구역 기본은 다음과 같다. 1. 제(종재해관리구역 : 산사태 · 해일 · 홍수 · 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되는 지역 2. 제(종재해관리구역 : 산사태 · 해일 · 홍수 · 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되는 지역 3. 제(종재해관리구역 : 산사태 · 해일 · 홍수 · 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 3. 제(종재해관리구역 : 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③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4조 제2형의 규정에 의하여 제(종재해관리구역 · 제2종재해관리구역 · 제3종재해관리구역을 지정 · 공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해관리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내용을 정하여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건축조례로 법 제47조 · 법 제48조 ·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 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내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③ (생 략) ④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소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④판매시설, 운수시설	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 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 시설  2. (생 략) ②・③ (생 략) ④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생 략) ⑤ (생 략)	1
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	제9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	제115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70조	4. 법 제53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 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법 제69조의2제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115조의3(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다. 표어 타마디를 담는 그중의 바다면구중 되네어 단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는 1 대이상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	1. 표어 아마다를 담는 그 중의 바디인 그 중 되어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는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 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3. (현행과 같음)
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이상 ② ·③ (생 략) 제91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①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 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가신한 대수 이상 ②·③ (현행과 같음) 제91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①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17조(권한의 위임) ③ (생 략) (신 설)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괴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1. (생 략) 2. 제(중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3. (생 략) 《신 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신 설) 5. (생 략)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7. 운동시설중 수영장 8. · 9. (생 략) 10.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② ~⑥ (생 략) 제(11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법 제67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3. (현행과 같음) 3의2. 종교시설 4. 판매시설 4의2. 운수시설 5. (현행과 같음) 6.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7. 운동시설 중 수영장 8. · 9. (현행과 같음) 〈삭 제) ②∼⑥ (현행과 같음) 제11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총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생 략)  2.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	제119조(면적 · 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환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청고 중 등등을 입을 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과 생기에 대한 건축면적의 신청방법은 건설 교통부병으로 정한다.  3. 바닥만역 : 건축물의 각 총 또는 그 일부로서 역 · 기존 기단 이와 유사한 구원의 중심선으로 출라싸인 부팅의 수원투인만적으로 한다. 다는 간 목의 이 구경하는 바에 액당하는 경우에는 경에 부분의 구원투인만적으로 한다. 다는 간 목의 이 구경하는 바에 액당하는 경우에는 경에 부분의 인반되는 가는 그것 사실의 경수에는 당해 부분의 인반점을 바면만쪽에 산입하지 아니반다.  7. ~이. (생 략)	현 행	개 정 안
설치유지 및 안전단리에 관한 법률 시행점, 제14 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합소(2004년 5월 29 일 이전의 것이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대 다양 다양 기계실 나이 바를 가든이 가족하는 비에 비한다. 가~가 (1 연락) 바 공동주쪽으로서 자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나이 만하는이는 건축판적에 산입하지 아나하게 된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비에 비한다. 가~가 (1 연락) 바 공동주쪽으로서 자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나이 만하들이나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 및 면적을 바다면적에 산입하지 아나한다.  4.~10. (생 박) ② ③ (생 탁) 제152으기본쟁조정) 인법 제76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본장을 조정받고자 하고 자는 건설교통부명 이 점하는 함께 보험 이 점하는 시간이는 건축된 생명 인지나가 다른이 단당이는이 소생하여 안한다는 바 대원으로 이라는 자는 건설교통부명 이 점하는 바에 의하여 사건으로 건축보장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다면 바 용을 명회히 하여 서면으로 건축보장조정위원회 이 참석한 하여 인적을 들고가 하는 지는 건설교통부명 이 경하는 바에 대한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회히 하여 서면으로 건축보장조정위원회 이 참석한 하여 인적을 들고가 하는 경우에는 함께 소설하여 한다. ② 조정 또는 제30이와 '조정의'라이 한다나를 받 의논에 소설하여 전에 인적을 들고가 하는 경우에는 함께 소설하여 한다는 보이는 1억의 기계조의 기계조의 가 한다면 바 전체자 또는 참고만은 조정위원회의 회 위에 출석하여 차여 인적을 들고가 하는 경우에 함께 자용하여 한다. ② 조정의원회는 법 제76조의제경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 서학 수일에 보려하는 1억에 보려하여 인적을 들고가 하는 경우에 함께 조심하여 한다는 보이는 1억의 기계조의 기계조의 기계조의 기계조의 기계조의 기계조의 기계조의 기계조	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 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3. 바다면적 : 간축물의 각 총 또는 그 일부로서 박 가동 기타 이와 유시한 구확의 중심선으로 둘러씨인 부모의 수평약면적으로 한다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의 전 등에는 하나에 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 의 면적을 바다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산 설)  사 "정롱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 어린에 등에는 조상세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 의 면적을 바다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산 설)  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인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용 인접을 하는 전에는 이는 생각에는 건축된 역에 설치되지 아니한다. 산산 설)  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인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용에 설치하게 아니한다. 4 ~10. (생 략) ② · ③ (생 등)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지와 산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만으로 건축분정조성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인하는 2 산원사를 보실 제가 6조의 사용기 있는 경우에 함하여 차면으로 건축분정조성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만하는 1 사 1 사용을 위한 경우 있다. ② 조정 또는 제공이한 사용기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분정조성을 위한 감상 있다는 1 사용 등에 소되는 1 사용을 남부하여 가하는 1 선생 제가 6조의 기계하일 가장에 의한 산용법, 제가6조의 제가 6조의 기계하일 가장에 의한 산용법, 제가6조의 개기하일 가장에 의한 산용법, 제가6조의 개기하일 가장에 의한 산용법, 제가6조의 개기하일 가장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가장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기원에 관하여 가장 등은 당대 제가6조의 기계하일 가장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기원에 가장이 보험에 조정되는 법제가6조의 가장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기상이 보험을 위한 감상 전략 제가6조의 기계하일 가장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기상이 보험을 위한 감상 전략 제가6조의 기계하일 가장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가장에 의하여 전상에 대한 조정을 보통할 수 있다. ③번 제76조의 전상적 대한 조정을 보통할 수 있다. ③번 제76조의 대한 조정을 보통할 수 있다. ③번 제76조의 자연 한국 조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보는 제정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 사업의 조정위원회 또는 제정에 의한 기상이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이나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 사업의 조정위원회 또는 제정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 사업의 조정위원회 다는 제정에 대한 조정은 등에 당시하기 대표자를 선정한 또는 제상에 대한 1한 1차로 때에는 1 사업이 대한 2 전용이 되었다면 대한 조정은 되었다면 대한 조정은 되었다면 대한 조정은 되었다면 대한 조정은 의하여 대한 1차로 때에는 1 사업이 조정위원회 보는 제정에 대한 조정은 되었다면 대한 조정의 기상이 대한 조정은 등에 당시하기 대한 1 차로 제정에 대한 조정은 되었다면 대한 조정의 기상이 되었다면 대한 1차로 때에는 1 사업이 조정위원회 보는 제정에 대한 1차로 때에는 1 사업이 조정위원회 보는 제정에 대한 1차로 제정으로 대표자에 되었다면 대한 1차로 제정에 대한 1차로 제정에 대한 1차로 제정으로 대표자에 대한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 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
들러씨인 부분의 수명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다. (현 랙)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 어린이들이는 · 조정사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다면적에 산답하지 아니한다. (신 설)  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에에 관한 법물시형령,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인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목제에 모하여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의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지와 신청사건의 배우를 예약과 같음)  4~10. (생 략) ② · ③ (생 략) ② · ③ (생 략) ② · ③ (행 략) 제110조오인분명조장) ①법 제76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의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유원회'로움의 고생수 보는 생각 보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화의 가실 5일본에 서면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에 출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최정 2일본에 내원 교환 수 있는, 생물 제76조약 내지 법 제76조약의 시합하여는 '인사소술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존용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약의 구정에 의해 설치를 가관을 제공할 수 있는, 영법 제76조약 대원 조정을 부탁할 수 있는, 영법 제76조약 대원 조정을 보루할 수 있는, 영법 제76조약 개호의 구성에 의한 본장조정의 대원 조정용을 한한 있어. — 세계주조약 보내지 법 제76조약의 자상의 의해 모두 보기를 가관을 자경하고 예치기 간을 정하여 당사지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76조약에 관한 조정위원회 보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76조약에 따라 조정위원회 보는 제정위원회는 법 제76조약에 따라 조정위원회 보는 제정위원회는 법 제76조약이 대로 분정 의조정등을 함에 있어. — 제110조약이 산업하다 한다.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약에 대한 조정위원 의료 문화 관장 보통한 수 있다.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76조약이 대로 분정 의조정등을 함에 있어. — 제110조약이 생각하다 환경을 조용하다 기업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건축본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건축본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 대표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건축본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건축본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건축본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건축본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건축본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건축본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건축본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 전성된 대표자이를 산업함 수 있다. 《건축단표자자가 한다는 다른 신청일 또는 때신형 한 문과 전성을 하는 다른 신청인 만든 대신형 안에 따라 보건된 보안 되는 대신형 안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외 당시하다 기반된 보는 당시 된 대관사이를 가입하다 가는 다른 신청일 전략 보다 반안 당시한 다른 전성할 수 있다. 《건축전자자자가 한다는 다른 신청할 수 있다. 《건축전자자자가 한다는 다른 신청할 수 있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압하지 아니한다.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ㆍ어 린이늄이타ㆍ조정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 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링,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 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나 폭 1.5미터 이하의 오이는 생물을 조했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명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간축분쟁조점에원의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정위원회의 의에 출석함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명조점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인사소송법」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운용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명조점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인사소송법」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운용한다. ⑤법 제76조의7제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당해 분쟁에 따란 조정등의 관상에 드로 관점을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건단・사업등에 소로되는 비용을 내치한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당해 당시하고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수 있다. 《신 설》  #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들 보급할 수 있다. 《업 점계6조의7제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8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함에 있어 보지로 바용을 매치하게 할수 있다. 《신 설》  #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들는 당시자가 제한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 《제119조의3(신청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시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9조의3(신청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시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 《제119조의3(신청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시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9조의3(신청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시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 《제119조의3(신청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시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 《제119조의3(신청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시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 《제119조의3(신청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시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 《제119조의3(신청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시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 《제119조의3(신청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안사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표자를 선정할 지수 있다. 《제119조의3(전체전자)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교회 수 있다. 《제119조의3(전체전자)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교회 수 있다. 《제119조의3(전체전자)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받으면 다음에 관한 전체전자 안사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9조의3(전체전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상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9조의3(전체전자)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9조의3(전체전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상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9조의3(전체전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상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가존의 다중이용업소 (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미나게단(근 건축물에 옥외미나게단(는 반단적에 산입하지 아나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바다번쪽에 산입하지 아나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바다번쪽에 산입하지 아나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바다번쪽에 산입하지 아나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는 바다번쪽에 산입하지 아나하를 받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지장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 의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건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계 집안에 서면으로 위치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회의계 집안에 서면으로 위치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 의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터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계 집안에 사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 의의에 출석할 수 있다. (3번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3제 관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 진단 · 사람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따라 조점을 보려할 수 있다. (3번 제76조의7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점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점위원회는 발 제76조의7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점위원회는 발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함에 있어 보다 조점등을 함에 있어 보다 조점등을 함에 있어 보다 조점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6제2함에 따라 조점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발제76조의6제2함에 따라 조점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발제76조의6제 대로자를 선정함 수 있다. (2건축분쟁조점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수 있다. (2건축분쟁조점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고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료 선정이고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료 선정이고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료자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매신형인을 위해 그 사건의 조점등에 관한 모든 행외 기관 수 있다. (2건축분관한 그 산건에 관관 당시되었다고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마신형인 관점이고 사건이 관점이고 자신함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있다고 하는 다른 신청이고 사건으로 전혀 기관 수입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어 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 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기계실 · 전기실
4.~10. (생 략) ②·③ (생 략) ②·③ (생 략) 제119조92(분쟁조정) ①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지는 건설교통부령이 장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취지와 신청시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유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인 산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⑥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수 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단 제76조의제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과하다고 인정하는때하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지원 다는대관자를 선정할 것을 권과함을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이나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과함 도시간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	(선 일)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 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바
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③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존용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수 있다. ⑤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법 제76조의16제1항에 따라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보유할수 있다. ⑥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기본 제36조의16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지원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보는 대전위원회는 등의 당사자가 되는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당사자가 제항에 따라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 ②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당사자가 제항에 따라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선정된대표자이하는 건성대표자,라한대는다른신청인 또는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핵위	②·③ (생 략) 제119조의2(분쟁조정) ①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 하여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4.~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9조의2(분쟁조정) ①법 제76조의2에 따라 분쟁 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
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 이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수 있다. 《신 설〉  제119조의3(선정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한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
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수 있다. 《신 설》  제119조의3(선정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건축본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건축본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대표자를 선정한 가입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선정된 대표자(이하산정대표자'라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	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 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③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수 있다. (신설)  제19조의3(선정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 ③제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선정된 대표자(이하산정대표자)라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	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 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⑥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수 있다. (신설)  제19조의3(선정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항에 따라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 ③제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선정된 대표자(이하산정대표자)라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고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	③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 한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	의 조정등을 함에 있어
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6)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 화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 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19조의3(선정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수 있다. (2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제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④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
(신 설) 제119조의3(선정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건축본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형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 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 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	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 화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	⑤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 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		등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재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 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

### [별표 2]

#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이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자역 및 일반공압자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을	<ul> <li>준공업자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li> <li>준공업자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li> </ul>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만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참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자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 하는 건축물	공업자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자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사설, 숙박사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사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사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마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만적의 합계가 500제곱이터 이상인 공장 (찬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자역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자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이터 이상인 판매 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료화 및 집회사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 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O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 ■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7696호, 2005. 11. 8. 공포, 2006. 5. 9.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사전결정제도 및 용도변경허가제도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추가 제출서류 및 허가권자의 검사기간(제16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 나. 건축허가표지판의 설치(제18조 신설)
  - (1) 법률에서 공사시공자가 건축허가 등이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도록 한 건축허가표지판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 구에 설치하도록 함.

#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	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	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제2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②법 제4조제2항	제2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②법 제4조제2항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
1.·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
3.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위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③·④(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	제2조의3(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	제2조의3(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가 동항제3호 및 제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시에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	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건축주는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	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
	사항	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또는 위촉한다.	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	③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
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1. 종전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
④(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⑤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		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그 의장이 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⑥중앙건축위원회 <b></b>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⑦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⑦중앙건축위원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	관계 전문가를 중앙	〈신 설〉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
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건축위원회의 회의		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⑨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		제출서류)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범위 안		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결정신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		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라 함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1.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	제10조(건축허가수수료)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8조·제9
	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	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법 제72조에 따
	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	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한한다)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기법」에	별표 4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위 안에서 건축조례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한 서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	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건축 또는 대수선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	아니하다.	
	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1	③(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	제11조(건축관계자변경신고) ①법 제8조 및 제9조의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8조 및 제9조
	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에 따라
	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4. 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	
	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	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4	
	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신 설〉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
	①하가권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②·③(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
	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	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	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	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
	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	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여부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관계 법률의 허가	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군수·구청쟁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야 한다.
   제6조(건축허가신청 등) ①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	제6조(건축허가신청 등) ①법 제8조제1항 · 제3항 및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제1항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1.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연면적의 합계가 100제	1.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하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	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	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
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하	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9	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	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재(이하	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회서 및 배치도로 갈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아이는 아이에 아이들이 아이는 그녀.	음한다.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1	2. 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	' 서류. 다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	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
를 증명하는 서류)	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	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변경하는	2, 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허가 등을 받거나
	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	경우를 제외한다)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	'6구글 세괴한데/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
	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A) A)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
〈신 설〉	1의2,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7조에 따라 건	@.@(AH ZB)	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②·③(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2 명표 201 기보서게드 네뷔 케스포케셔팅이 그런	경우에 한한다) 2 병표 201 서게드 H/번 제7조에 따르 내저경제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용도 비명 제1조의 12대로 바이커트 지난 병자 제1조의 14시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법 제19조제4항의 규정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	하여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	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	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
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외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
	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게 제출하여야 한다.	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0 (14 34	및 배치도에 한한다.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0 (11 36	한다.
〈신 설〉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정 아 행 〈신 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선 ·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8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 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유가스 완성검사필증 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 \_\_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 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 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 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 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 ②(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 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 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 (생 략)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 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 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 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 조·법 제35조 내지 법 제41조·법 제43조·법 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제44조 · 법 제46조 내지 법 제49조 · 법 제51 \_법 제50조\_ 15조제8항에 따라\_ 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 조·법 제53조 내지 법 제55조·법 제57조·법 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 제59조 · 법 제59조의2 · 법 제59조의3 및 법 제 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 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 〈단서 삭제〉 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설계도서의 작성등) 영 제18조제1항 단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삭 제〉 제출을 생략한다. 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 은 영 제15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 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하다.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신설〉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 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 \_\_ 법 제15조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 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 검사 또는 확인업 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 ④~⑥ (현행과 같음) 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 4~6(생략)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제14조(착공신고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 제14조(착공신고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각각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 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 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 1,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 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 1.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 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건축물인 경우에는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 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라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 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는 경우에 한한다) 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④(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③허가권자는 ⑤제2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축·개축·대수 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 〈신 설〉 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 선의 착공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 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다)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 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법 제9조제1항 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사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용승인신청서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 〈신설〉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관계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 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 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완성 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 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 〈신설〉 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

<u></u> 현 행	개 정 안
<u>Σ</u> 8	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 영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는 별지 제
	2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 · 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	
$\mathrm{M}\cdot\mathrm{CM}$ 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	38조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 노동관서의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
장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제25조의2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지사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	
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 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
	국물의 설거·물질 어구들 확인한 후 건국물대장   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에서 걸기 '걸걸전 전국물의 대중을 골소이어야   하다
/ 4 1 . 4 4 \	전다.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
〈신설〉	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
	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
	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조정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	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4조정등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	2
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신청서에 첨	
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의3(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법 제76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
	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 앙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조정위원회의 업무
	를 통할한다. 
	글 등글한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④중앙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⑤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뒤 쪽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7조	
유의사항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	허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 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 작성방법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건축물의 설비 · 대피 및 위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 세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u> </u>	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
	장·주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및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시설의 용도
⑥"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 면적으로 합니다.
⑥"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l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	
⑥ 건폐율 은 건축면적 ÷ 대기	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⑩ "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의 적 × 100(%)로 합니다.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제외) ÷ 대지면
②"구조"는 목조·조적조·철	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철골철근콘:	크리트조·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

②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여 기재하

며, 세대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세대/기구)수를 기재합니다.

0 6 0 6 H 한 건 축 사 협 회 105

											,	- "
			사전결	정신청	Ч							
	①성 명			②주 F	비등회	루번호	Т					
신 청 인	③주 소			1011	_ 0 -		H 번호				)	
14 NI TI	④성 명		서명(인)	5사	무	소 명						
설 계 자	⑥주 소						번호				)	
ell TI	⑦위 치											
대 지 조 건	⑧지 역			9지		구						
쪼 신	10 지 목			⑪ 면		적					m²	
	⑫주 용 도			(3부 ·	속	용 도						
용도	00 F H	용도명 :									m²	
ㅎ 포	100용 도 별	용도명 :									m²	
	면적	용도명 :									m²	
	⑥건축면적	m²	66연 면 적			m²	(7)지 5	l 면적	$\perp$		m²	
규 모	18건 폐 율		%	19용	적	률						%
	20층 수	지생(	)층, 지하(	)	층, 건	축물최고	높이(	)n	1			
20구 조												
②주차장 규모		(	)m²,	(		)CH						
23주택형태				24세 대	수							
30일괄처리 내용	용(해당란에 V표를	합니다)	_									
<ul><li>건축위원회</li></ul>	심의							유(	)	무(	)	
<ul><li>교통영향평</li></ul>	가							유(	)	무(	)	
○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유(	)	무(	)	
○ 개발행위허	가							유(	)	무(	)	
○ 산지전용하	가 및 산지전용신	고						유(	)	무(	)	
<ul><li>농지전용하</li></ul>	가?신고 및 협의							유(	)	무(	)	
<ul><li>하천점용하</li></ul>	가							유(	)	무(	)	
	제1항 · 제2항 및 동법 시장 · 시장 · 군수 · -		조제1항에 따라 위와 년 월		선결정을	을 신청합니		!청인		(A	명 또는 (	2)
를 신청하는 : 2. 「환경・교통 결정신청과 등 3. 「환경정책기는 대지면적 등 0 4. 법 제/조제6	규칙, 제2조의3에 따경우에 한합니다) 자해 등에 관한 영향 통시에 교통영향평가 발법,에 따른 사전환; 이 「환경정책기본법?이 항 각 호의 허기를 받 축계회서 및 배치도	향평가법」에 따른 를 신청하는 경약 경성검토를 위하 에 따른 사전환경	를 교통영향평가를 수 우에 한합니다) 여 동법에서 제출하 명성검토 협의대상인	위하여 동 도록 한 사 경우에 8	법에서 서류(「건 반합니다	제출하도 축법, 제7	록 한 서류 조제1항에	(「건축법」 따라 사전	제72	E제2항에 성이 신청	I 따라 사 된 건축물	전의
								210mm×2	2971	m(보존&	용지(2종)	70g/m <sup>1</sup>
별지 제1호의3	3서식]											

(앞 쪽)

[별지 제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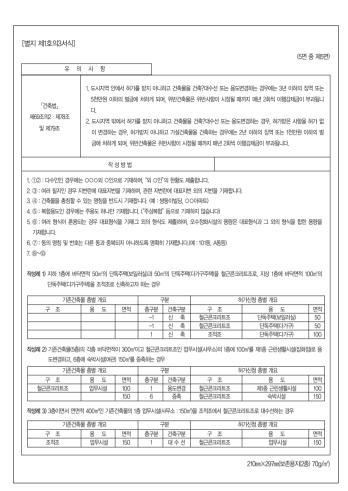
	n			
[별지 제1호의3서4	引			(5면 중 제2면)
	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자	년 월 건: 유 또는 그 시 이의 범위와 =	일 축 주 ( 축 주 ( 사용에 관한 권리를 1 대지의 소유에 관	위와 같이 하기를 신청합니다. 서명 또는 인)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 1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간축법', 제8 47분 받아 '국택법', 제5조제하이 때로 호
신축·중축·개 축·재축·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 축물의 건축	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 · 공급 2.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 은 경우에 한합니다)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9조제48 다.	라하는 경우 다 전결정서(「건 서(「건축법」; 왕에 따른 표현	내지의 소유권에 관 축법, 제7조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사전 조설계도서에 따라	한 사항은 '주택법, 제6조를 준용됩니다.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건질정사를 승부받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 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	· 후의 설계도	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총의 변경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광역시·시·군·구	L	처리부서	건 축 허 가 부 서
수 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 · 광역시 30~90일 시 · 군 · 구 2~20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90일)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8조제1항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2 건축하기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	병우에는 미리 계가 10만제곱 합계가 10만제	시장·군수·구청 람미터 이상인 건축 [곱미터 이상으로 !	를 받이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9조제'한 및 동 장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됐(만단찍의 10분의 3 이상의 중축으로 인하여 총수 파는 경우의 중축을 포함하되 공장을 제외합니다)을 의 하기를 받이야 합니다.
「건축법」 제10조제1항	• 허기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	위		
「건축법」 제14조제2항	•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밀	합니다)		
「건축법」 제15조제1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	지에 가설건축	목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사전	결정신청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	③주 소			(연락처	)
		· 결 정	내 용		
			적합	부적합	
④신청내용에 C 검토결과	개한 건축법령 등	부적합 사항			
⑤건축위원회 선	식의		적합 부적합	(사유 :	)
⑥교통영향평기			적합 □ 부적합 □	(사유 :	)
⑦사전환경성검	토 협의		적합 □ 부적합 □	(사유 :	)
⑧개발행위허기			적합 □ 부적합 □	(사유 :	)
⑨산지전용하기	및 산지전용신고		적합 🗌 부적합 🗌	(사유 :	)
(1)농지전용하기	・ 신고 및 협의		적합 □ 부적합 □	(사유 :	)
(1)하천점용하기			적합 □ 부적합 □	(사유 :	)
⑫그 밖의 사항					
			,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제6항 :	각 호의 허가를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당·시장·군수·구청장	(인)
유의사항		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

						(an) = -
						(6면 중 제
「건축법」제9조 ·	제10조제1항 · 제14조 및 동법		제12조의2어 년 월	따라 위와 같이 건 일	축?대수선?용도변경	생고서를 제출합니다.
시장 · 군수 · 구청	형장귀하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부만 제출하며, 8 제출을 생략합니다		경우는 건축할 대지	I의 범위와 그 대X	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자 표 2의 설계도서 중 건 나. '건축법, 제19조제4항! 다. '건축법, 제7조에 따른	H곱미터를 초과하는 축계획서 · 배치도 에 따른 표준설계도 사전결정을 받은 호에 따른 허가 등 = 경우에 한합니다	: 「건축법 A · 평면도 · 입 :서에 따라 간 경우 : 평면5 을 받게나 산	행령] 별표 1 제1호 면도 · 단면도  축하는 경우 : 건축  :  고를 하기 위하여 8	의 단독주택을 건축 계획서 및 배치도 배당 법령에서 제출	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 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사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사항변경	없음					
대 수 선	없음					
	신 고 안 내					
제출하는 곳	시·균	·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3일
「건축법」 제9조제(항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200대의대터 미반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함가 100대급 건축물의 높이를 3이터 이 인정하여 건축조제로 정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역산업형에 한탁나다 및 의 함과가 500대급이터 능업 · 수산업을 영위하기	다만, 제2종지구단)고 3층 미만인 건축 미터 이하인 건축함 하의 범위 안에서 파른 표준설계도서 는 건축물 과한 법률, 제36조 '산업입지 및 개별 이하인 공장 위하여 읍 · 면지의	사위계획구역 사물일의 대수 로 증축하는 건 에 따라 건축 제1항제1호디 같에 관한 법:	안에서의 건축을 제 선 축물 총하는 건축물로서 - 목에 따른 공업지역 률,에 따른 산업단지 군수가 지역계획 또	외합니다.  2 용도 · 규모가 주  5, 동법 제51조제3호 안에서 건축하는 ( 근도시계획에 지장(	연단적 200제급미터 미만이고 위원경 - 미관상 지정이 없다고 이 때른 제2종자구단위계획구 2종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단적 이 있다고 인정하여 저정 · 공교 이하의 축사 · 작물째해사
「건축법」제10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69조의2 · 제80조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기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자		경우에는 2	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며, 위	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건축법」 제69조의2 · 제78조	도시지역 안에서 신고 없이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제69조의2 ·	신고시항 변경시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는 경	경우와 도시자	l역 밖에서 신고 없(	이 용도변경을 한 경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계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210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106 Korean Architects june 2006



IV. C	l 수 선 개 요					
대수선 내 용	내 력 벽	수선 또 주설 · 8 주설 · 8 주실 · 8 주 6 주 6 주 6 주 6 주 6 주 6 6 6 6 6 7 6 7 6	는 변경 여부 배체 · 수선 · 행물의 외부형된 경계벽의 증성	를 표시하시기 변경 [ ㎡] 변경 [ 개] 변경 [ 개] 변경 [ 개] 변경 [ ㎡] 변경 [ ㎡] 변경 [ ㎡] 변경 [ ㎡]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바랍니다. 명 당 당 나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	경계멱의 중설	월·해제·수선	· 면경	
작성방법						
1, ⑤ : 복합용도인 경우0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 기재합니다. 5,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	l는 주용도 하나만 7 되는 경우 대표형식	기재합니다 을 기재(그	.("주상복합" 1 외의 형식되	등으로 기재하 도 제출)하며, 5	I지 않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C	내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
(6): 복합용도인 경우이 (6): 여러 형식이 혼용 기재합니다. (6): ⑦: 동의 명칭 및 번호 (7): 동의 명칭 및 번호 (8)~(3) 악성례 2) 지하 1층에 바 단독주택(다가	는 주용도 하나만 7 되는 경우 대표형식회 는 다른 동과 중복도 락면적 50㎡의 단독 구주택을 조적조로 7	기재합니다 을 기재(그 티지 아니히	t.("주상복합" 1 외의 형식되 하도록 명확하 러실]과 50m 다 경우	등으로 기재하는 제출/하며, 1 기재합니다.((	(지 않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 예 : 101동, A동등) 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	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 ⑤ : 복합용도인 경우이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 기재합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 7. 용~⑤ *** *** *** *** *** ** ** ** ** ** **	는 주용도 하나만 7 되는 경우 대표형식 는 다른 동과 중복도 닥면적 50㎡의 단독	기재합니다 을 기재(그 티지 아니히 주택(보일 건축하고자	L("주상복합" L 외의 형식도 나도록 명확하 라실과 50m 나하는 경우	등으로 기재하다. ( 로 제출)하며, ( 기재합니다.(( '의 단독주택()	(지 않습니다) 2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더 계:101동, A동등) 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 ************************************	
. ⑤: 복합용도인 경우아 . ⑥: 어려 형식이 혼용 기재합니다. . ⑦: 동의 명칭 및 번호 . 용~③ 박성례 2) 지하 1층에 바 단독주택(다가	는 주용도 하나만 7 되는 경우 대표형식회 는 다른 동과 중복도 락면적 50㎡의 단독 구주택을 조적조로 7	기재합니다 을 기재(그 티지 아니히	('주상복합' 1 외의 형식되 나도록 명확하 러실]과 50m 나하는 경우	등으로 기재하다. ( 교 제출)하며, ( 기재합니다.(( '의 단독주택( 프 건축구분	지 않습니다) 2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다 계:101동, A동등) 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 후 구 조	기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기신청 총별 개요 용 도
( ⑤ : 복합용도인 경우이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 기재합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 7. 용~⑤ *** *** *** *** *** ** ** ** ** ** **	는 주용도 하나만 7 되는 경우 대표형식회 는 다른 동과 중복도 극면적 50㎡의 단독 구주택을 조적조로 7 등물 총벌 개요	기재합니다 을 기재(그 티지 아니히 주택(보일 건축하고자	('주상복합' 1 외의 형식되다 1 외의 함께	등으로 기재하다.(* - 제출)하며, 5 - 기재합니다.(* '의 단독주택(* '본 건축구분 신 축	[저 않습니다) 2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해: 101동, A동등) 다가다주택)을 철근콘크리  추 조 철근콘크리트조	민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기사신청 총별 개요 용 도 단독주택보일러실)
. ⑤ : 복합용도인 경우이 . ⑥ : 여러 형식이 혼용 기재합니다. .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 . ⑧ ~ ⑧ . ⑧ ~ ⑩ 단독주택(다가) 기존간	는 주용도 하나만 7 되는 경우 대표형식회 는 다른 동과 중복도 극면적 50㎡의 단독 구주택을 조적조로 7 등물 총벌 개요	기재합니다 을 기재(그 티지 아니히 주택(보일 건축하고자	('주상복합' 1 외의 형식되 나도록 명확하 러실]과 50m 나하는 경우	등으로 기재하다. ( 교 제출)하며, ( 기재합니다.(( '의 단독주택( 프 건축구분	지 않습니다) 2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다 계:101동, A동등) 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 후 구 조	기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기신청 총별 개요 용 도
(, ©) : 복합동도인 경우아, 등, ©) 다려 함식이 혼용 가게합니다. 기계합니다. (기) : 동의 명정 및 반호 (망아생) 착성례 2) 지하 1층에 바 단독주택(다가 기존건구 구 조 기존건수 기존건수 기존건수 구 조 기존건수 구 조	는 주용도 하내만 가 대한 생각 하나만 가 다 함께 하는 건은 대표한 생각 한 대한 대한 생각 한 대한 대한 생각 한 대한 대	기재합니다 을 기재(그 티지 아니하 주택(보일 건축하고자 면적	('주상복합' 외의 형식되	등으로 기재하다. 도 제출하며, 1 기재합니다.(이 가장합니다.(이 단독주택(	지 않습니다) 2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다 제 : 101동, A동등) 다가구주백을 철근콘크리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설무크리트조 소작조 g) 80㎡을 조작조로 중축 후 구 조 조작조	내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만적 기가신청 충별 개요 용 도 단독주택보일라실) 단독주택(기가) 단독주택(기가) 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숙박, 기가신청 충별 개요 용 도 판매사설
( 6) : 복합동도인 경우아 ( 6): 이러 형식이 혼용 기재합니다. ( 7): 동의 방정 및 반호 ( 8)~( 8) 삼성례 2) 지하 1층에 바 단독주택다가 기존건 구 조	는 주용도 하나만 7 대표형식  는 다른 동과 중복도  라면적 50㎡의 단독  라면적 50㎡의 단독  경우 등별 개요  용 도  의의 각종 바닥면적의  경우 경박 개요  등 업무시설시무실  등용 경별 개요	기재합니다 을 기재(= 티지 아니하 주택(보일 건축하고자 면적 미 300㎡(이)로 용도한	('주상복합' 1 외의 형식5	등으로 기재하다. (* 기재합니다.(* 기재합니다.(	지 않습니다) 2수정화시설의 용왕은 다 제 : 101동, A동등) 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 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8	기신청 충별 개요 용도 단독주택(다가) 단독주택(다가) 단독주택(다가) 당독주택(다가) 당독주택(다가) 당독주택(다가) 장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숙박, (가신청 충별 개요 용도
7 (지하나다. 7 (기 : 5 의 명칭 및 번호 (영 · 6) (영 · 6) 명칭 및 번호 (영 · 6) (영 · 6) 명칭 및 번호 (영 · 6) 명칭 및 번호 (영 · 7) 지존 (영 · 7) (G	는 주용도 하시만 7 대표형식에 되는 경우 대표형식에 는 다른 통과 중투도 대표형식에 되는 다른 통과 중투도 무역에 을 조선으로 간 등을 증별 개요 용 도 무역에 들 전에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지원 기계 등 기계	[재합니다 을 기재(그 이 아니리 이 아니 이 아니 이 아니 이 아니 이 아니 이 아니 이 아니 이 아니	('주상복합' 1 외의 형식도 1 외의 형식도록 명확하 1 외의 형식도록 명확하 1 하는 경우 1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등으로 기재하는 지속하여	지 않습니다) 2수정화시설의 용왕은 다 제:101동, A동등) 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로 조 조 출근콘크로(토조 출근콘크로(토조 출근콘크로(토조 조작조 중 종 구 포 조 조작조 중 종 중 구 포 조 조작조 출근콘크로(토조 조작조 중 종 주 포 조 조작조 출근콘크로(토조 조작조 출근콘크로(토조 조작조 출근콘크로(토조 조작조 중 종 주 포 조 조작조 출근콘크로(토조 중 종 중 종 주 포 조 조작조 출근콘크로(토조 중 종 중 종 주 포 조 조작조 출근콘크로(토조 중 종 중 종 주 포 조 조작조 출근콘크로(토조 중 종 중 종 주 포 조 조작조 출근콘크로(토조 중 종 종 주 포 조 조작조 중 종 중 종 주 포 조 조작조 중 종 중 종 주 포 조 조작조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주 포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IE조로, 자상 1층에 바닥면적 (가신정 층별 개요 용 도 면독주택(되가)라 단독주택(다가)라 (한국 한국 한
(, ©) : 복합동도인 경우아, (©) : 여러 항식이 혼용 기계합니다. (기 : 동의 명칭 및 반호 (장) · (	는 주용도 하면? 가 대표현식에 되는 경우 대표현식에 는 다른 통과 중복도 대한 50m'의 단독 가수택을 조착조로 경쟁을 함낼 개요 용도 모양되었다는 경우 등 보다 되었다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되었다면 되었다는 것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대합니다 을 기재(그 이내지 아니하 근주택(보일 건축하고자 먼적 기 300m <sup>(4)</sup> 무면적 150	는 ('주상복합' 한 외의 형식도 보고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등으로 기재하고 기재하다 ( ) 대출하다 ( ) 기재합니다.( ) 기재합니다.( ) 인독주택( ) 인독주택( ) 인독주택( ) 인독주택( ) 인독주분 신 축 신 축 신 축 인 중 주 ) 인독주분 중 축 용도번경 [무소 : 100m²) 무소 : 100m²)	지 않습니다) 2수정화시설의 용왕은 다 제 : 101동, A동등) 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 도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조직조 () 80㎡을 조직조로 중축 구 조 조직조 철근콘크리트조	기산청 충별 개요 용 도 단독주택보일러실) 단독주택보인거가 하고, 철근코크리트조인 숙박. 기사청 충별 개요 용 도 만에서설 충별 개요 용 도 만에서설 충별 개요 용 도 만에서설 업무시설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스이시하다		
	신국항공간인시포	VISS 1118/I		
신청인(기관)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연론	拭:	
이용목적		0)용7판		
법적근거		지료를 제공받는 방식		
신청내용 · 항목				
자료요구 범 위	국가( ), 특별	시·광역시·도( ), 시·군·=	7( )	
안전관리 대 책				
「건축법」제25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건축행정전	선자료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심사결과 1부 항목란 및 안전관리대책란의 경우 별지 작성이			

			건축물유지	· 관리점검	걸표		
건축물위치	:				지번		
건축주							
	126조, 동법 시( · 구청장 귀하	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		지·관리 실태 월 일	H를 점검한 결과를 제 건축지도원	(서명 또는	인
점검항목	「건축법」		유지・	관리 실태			형시0큳
	제30조	대지의 안전			□해당없음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해당없음		
대지	제33조	대지 · 도로 관계			□해당없음		
	제37조	건축선 제한	_		□해당없음		
	제47조	건폐율	_		□해당없음		
	제48조	용적률			□해당없음		
높이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해당없음		
및 형태	제51조	높이제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841	제53조	일조제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67조	공개공지 확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구조안전	제38조	구조내력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단 · 복도 · 출구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옥상광장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39조	방화구획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계벽 · 간막이벽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화재 안전		기타 피난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55	제40조	내화구조 및 방화벽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41조	방화지구내 건축물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43조	내부마감재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F.	제44조	총하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 저설비		난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55조	배연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		피뢰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57조	승강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종합 의견							